
2024 ~ 2027년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계획**

2024. 4.

보건복지부



목 차



I.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안내	1
1. 추진 배경	1
2. 시범사업 개요	1
3. 사업 전·후 변화	5
II. 대상지역 선정방안	6
III. 향후 일정	8
<붙임 1> 선정평가 지표 및 배점안	9
<붙임 2> 업무협약서[예시]	10
<붙임 3> 사업계획서 작성서식	12

1. 추진 배경

-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상태는 OECD 국가 중 하위권*, 만5세 아동의 66.4%가 유치 충치 경험이 있으며, 만12세 아동의 58.4%가 영구치 충치를 경험(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2022)

* 만12세 우식경험영구치지수 : 한국(1.8), 일본(0.8), 스웨덴(0.7), 덴마크(0.3), 핀란드(0.9), 독일(0.5), (세계치과의사연맹(FDI), 2023)

- 치과질환은 어릴 때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전 생애주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예방 및 조기 발견이 중요하나,
 - 일반적으로 통증 발생 등 상태 악화 이후 치료를 받아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부담 가중**

* (아동청소년기) 충치경험률 → (성인기) 치주질환 유병률 → (노년기) 치아상실

** 외래 치과의료비 규모, '00년 1조9천억원 → '20년 9조5천억원, 5배 증가(국민보건계정, 2020)

- 아동기 올바른 치아관리습관 형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예방관리제도 도입 필요에 따라 '21.5월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3년)
 - 그간 추진된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4.7월~)

2. 시범사업 개요

① 개념 : 예방중심 포괄적·지속적 구강관리 사업 + 건강보험 시범사업

- 아동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원을 사업기간 동안 6개월마다 정기 방문하여 문진·시진, 검사를 통해 치아의 발육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교육, 예방처치 등을 받는 사업

* 참여아동이 주치의 등록 치과의원 중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고 방문하여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치의에게 사업참여 신청

-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건강보험을 통해 시범 운영되는 사업

◆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시범사업)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 목적 : 사업 효과성 평가, 사업모델 · 수가 적정성 평가 등

-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아동 구강건강에 미치는 효과성 등을 평가
 -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의 모델, 수가, 관리체계 적정성 등을 평가/보완
- ⇒ **평가결과에 따라, 본사업으로 전환 또는 종료 결정**

③ 시범사업 기간 : 2024년 7월 ~ 2027년 2월 (2년 8개월)

④ 대상지역 : 17개 시 · 도 및 시 · 군 · 구 중 3~5개*

※ 제1차 시범사업('21.5~'24.4)에 참여한 2개 시·도(광주, 세종)는 지속 참여

* 단 선정된 지역의 아동 수 및 시범사업 재정 등에 따라, 추가 선정될 수 있음/ 시·군·구 기초단위 사업참여 신청 가능

⑤ 대상아동 : 초등학교 1학년 · 4학년

- 영구치 맹출시기인 초등 1학년 아동에 대한 서비스 확대로 저학년에 대한 교육 효과성 및 예방치료 효과성 등 평가

- 매년 진급하는 초등학교 1, 4학년 아동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참여* 가능

* ('24학년도) 초1, 초4 → ('25학년도) 초2, 초5 + 초1, 초4(신규) → ('26학년도) 초2, 초3, 초5, 초6 + 초1, 초4(신규)

⑥ 참여기관 : 주치의로 등록된 치과의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 아동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된 치과의사
 - 아동치과주치의 교육과정 이수 후 건보공단 누리집(요양기관정보마당) (<https://medicare.nhis.or.kr/portal>)에서 직접 등록

7 서비스 내용 : 구강상태평가, 관리계획 수립 및 충치예방관리

- (구강상태평가) 치아 발육(유치, 영구치, 결손치, 교합), 치아 건강(우식치아, 충전치아, 우식발생위험치아) 및 충치위험도* 평가를 실시
 - * 충치위험선별지표를 통해 충치 고위험, 저위험, 양호 등으로 구분하여 행동개선 목표를 제시하고 6개월마다 점검
- (구강위생검사, PHP*) 올바른 칫솔질 여부를 확인하고, 구강관리 동기 유발을 위한 체험식 교육·검사 실시
 - * PHP(Patient Hygiene Performance): 연 1회는 기본서비스로 실시하고, 충치위험군으로 분류된 아동은 매회(최대 3년간 6회) 실시하여 선별 적용
- (칫솔질 교육) 구강위생검사 결과를 토대로 칫솔질이 바르게 되지 않은 치태가 쌓인 치아 위치 등을 설명
- (관리계획 수립) 구강상태평가 및 구강위생검사 결과에 따라 예방진료, 필요시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구강관리 행동개선 목표 제시
- (예방진료·치료) 수립 관리계획에 따라 예방진료(치면세마,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필요시 보호자(아동)의 동의를 얻어 충치 조기치료 및 2차 충치 등을 치료
- (구강건강리포트) 보호자에게 치아의 발육 및 건강상태, 진료내용 등을 리포트 형식으로 제공하여 구강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치아 발육, 치아 건강, 구강위생 및 위생관리능력지수, 충치위험도 평가 결과, 예방 및 치료계획, 생활실천 관리계획 등



8 서비스 비용 : 건강보험 시범수가(공단 부담 90%, 아동 부담 10%)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면제

○ (아동치과주치의료(I)) 1회당 45,730원

* 구강상태평가 및 진료계획 수립, 행동개선 목표 제시, 평가, 조정 등을 관리하는 치과의사에게 '구강위생검사'(PHP), 칫솔질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를 시행한 경우 지급하는 수가

○ (아동치과주치의료(II)) 1회당 42,430원

* 구강상태평가 및 진료계획 수립, 행동개선 목표 제시, 평가, 조정 등을 관리하는 치과의사에게 구강위생검사를 제외한 치면세마, 불소도포만을 시행한 경우 지급하는 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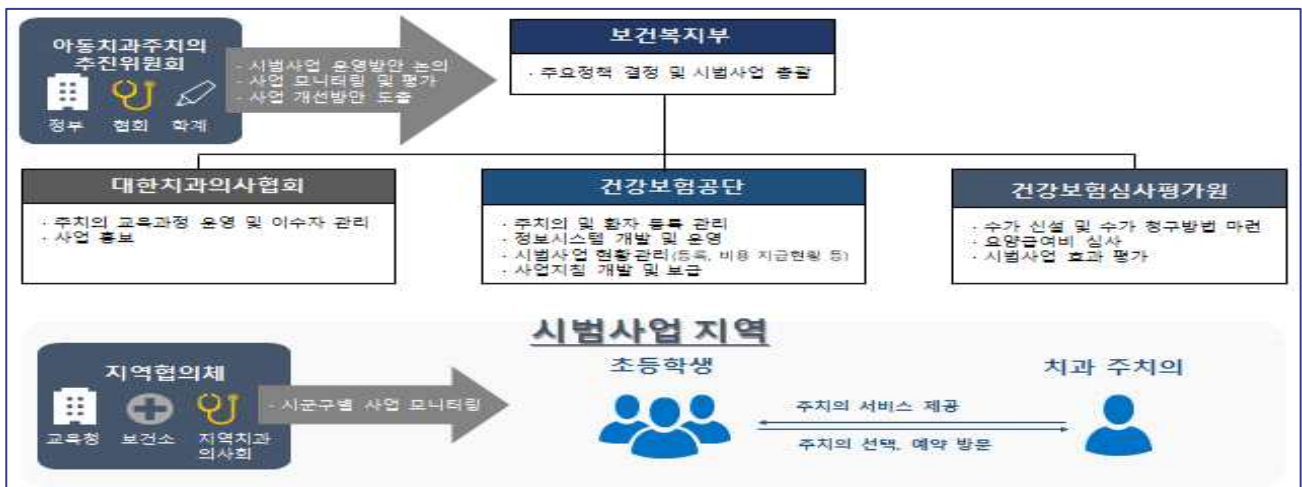
기존				개선(안)			
코드	구분	점수	금액	코드	구분	점수	금액
IB751	가. 아동치과주치의료	59.61	5,720	IB○○○	가. 아동치과주치의료(I)	476.36	45,730
IB761	나. 충치예방관리료	297.60	28,570	IB△△△	나. 아동치과주치의료(II)	441.98	42,430
IB762	주. 치면세마와 불소도포만을 실시한 경우	263.27	25,270				

* IB751+IB761=34,290원 / IB751+IB762=30,990원
 * (본인부담금, 10%) 약 3,400원

▶ - 아동치과주치의료(I) : 기존 아동치과주치의료 + 충치예방관리료 행위 전부 시행
 - 아동치과주치의료(II) : 기존 아동치과주치의료 + 충치예방관리료 중 구강위생검사(PHP) 제외한 행위 시행

9 추진 체계

○ (추진체계) (총괄) 복지부 - (사업관리) 건보공단 심평원·사도 - (협조) 교육부·치협



○ 중앙-지방-유관기관-민간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 (보건복지부) 사업모형 개발 및 비용부담, 사업관리*, 성과평가** 등을 담당

* 사업 관리(지침, 등록, 실적 등)를 위한 전담팀 및 정보시스템 운영 (건보공단/ 심평원)

** 시범사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중장기 연구용역 추진

-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과 지역 자원·사업 간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지역 내 학교, 학부모, 치과의원 대상으로 사업 홍보 및 참여를 독려

- (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 및 지자체 업무 지원*

* ▲ 아동 및 주치의 등록 관리, ▲ 서비스 비용 지불, ▲ 시범사업 현황 관리(등록 및 유지, 서비스 제공 현황 등), ▲ 시범사업 운영지침 개발 및 안내, ▲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 대국민 홍보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 개발·청구 심사 및 사업 효과성 평가

- (추진위원회*(중앙-지자체-민간) 및 실무TF**) 추진현황 공유 및 의견수렴

* (추진위, 반기별) 사업 추진현황 공유, 세부 운영방안 및 개선방안 논의

** (실무TF, 분기별) 서비스 매뉴얼, 주치의 교육, 성과평가 방안 등 논의(필요시 수시)

- (관련 협회) 회원 대상 안내·홍보 및 보수교육 연계 등

3. 사업 시행 전 · 후 변화

구 분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방문 주기	통증 등 증상발현시 내원	6개월 1회 정기 방문
진료 내용	치료중심의 증상 해소	통증 및 질환 발생 전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적극적 예방 처치
진료비	필요시 의사 권유에 의해 불소도포 시행, 전액 본인부담	충치예방진료 본인부담률 10%
진료 결과	구두로만 설명	구두설명과 함께 구강상태 및 유소견, 치료내용, 행동개선계획 등이 포함된 구강건강리포트 제공

II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방안

① 신청 주체 : 시·도 또는 시·군·구

- 제1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2개 시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또는 시·군·구(기초단위 참여 신청 가능)
- 기존 지역의 사업 효과성 평가 등을 위해 현재 참여 중인 시·도 (광주, 세종)는 지속 참여

② 선정 규모 : 3~5개*

* 단 선정된 지역의 아동 수 및 시범사업 재정 등에 따라, 추가 선정될 수 있음

③ 신청 기간 : 2024. 4. 9(화) ~ 2024. 4. 26(금). 18시까지

④ 신청 방법

- 시·도(+시·군·구)는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붙임3」)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 1부(과일, 공문 제출), 사업계획서 10부(책자, 우편송달)
- 제출처 :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 * 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건강정책국 구강정책과 김예지 주무관 앞(☎ 044-202-2846)

⑤ 선정 심사

※ 아래 일정은 공모 및 사업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위원회) 시범사업 추진위원, 실무TF 위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심사절차)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구두발표 심사
- (심사평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고득점 기관 순으로 선정
-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지자체는 선정에서 배제, 60점 이상인 지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 실시

6 심사 항목

-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 아동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자체별 아동 구강건강 수준 등 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 심사

※ 학교 구강검사 및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등

- (사업추진 정책환경) 시범사업 시행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역 구강보건 인프라, 지역 구강보건 정책사업 시행현황 등 심사
- (사업추진 의지) 학교 구강검진 연계, 참여 독려,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협의체(지자체, 교육청, 치과의사회) 준비 및 사전협의 수준* 등 심사
* 예시) 학교 구강검진 갈음 관련, 지역 교육청 등 협의 유무 및 사전협의 수준(과장급, 국장급 등), 지역치과의사회 참여의지 등
- (사업계획 타당성) 취약계층 지원, 사업홍보, 의견수렴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여부 및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

7 최종 선정

-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에 기반하여, 선정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보완
- 사업계획서 보완 후 최종 선정 및 통보

Ⅲ

향후 일정

※ 아래 일정은 공모 및 사업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모 및 접수('24. 4. 9 ~ 4. 26)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24.5월 2주)
- 사업계획서 보완 및 최종 선정('24.5월 3주)
- 지역협의체 구성(~'24.5월 말)
-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개최('24.6월 초)
- 매뉴얼 및 사업 지침 배포('24.6월 초)
- 치과의사 대상 사업 설명회('24.6월 초)
- 주치의 교육 및 주치의 등록(~'24.6월 말)
- SNS, 커뮤니티, 모바일 알림장 등 타겟별 집중 홍보 추진('24.6월~)
 - 참여자 대상 리플릿 배포(교육청 및 학교 협조 등)
- 아동 참여 신청·등록 및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제공('24.7월~)

붙임 1

선정심사 기준(안)

항목	지표	내용	배점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 (10)	아동 구강수준	-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이 큰 지자체 - 아동 구강 건강수준* 등 고려 * 학생 구강검사, 아동 구강건강 실태조사 결과 등	10
사업추진 정책환경 (25)	구강보건 인프라	- 시범사업 시행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필요한 공공/민간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자체 -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수, 치과 의료기관 수,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실) 설치·운영 현황 등 고려	15
	구강보건 사업	- 시범사업 시행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필요한 정책사업이 다양하게 시행 중인 지자체 -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치과주치의 사업 운영여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여부 등 고려	10
사업추진 의지 (25)	협력체계 구축·운영	- 학교 구강검진 연계, 홍보,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을 위한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지자체 - 협의체 구성 준비 및 사전 협의수준 등 심사 - 협의체 구축·운영 계획의 적정성/구체성 등 심사	25
시범사업 운영계획 (40)	연계사업 운영계획	- 시범사업 모형과 지역 자원/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추진할 수 있는 지자체 - 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평가	10
	사업 홍보계획	- 학교, 아동(학부모), 치과의사회, 치과의원 등의 시범사업 참여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지자체 -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평가 * 홍보 방법, 주체, 시기 등	10
	현장 의견수렴 계획	- 참여자(주치의, 아동)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자체 -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평가 * 의견수렴 방법, 주체, 시기 등	10
	재정계획	-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재정의 추가 투입이 가능한 지자체 - 예산편성 확보 계획 및 실현가능성 등 평가	10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 및 구강격차 해소를 위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민·관 협력 업무협약(案)

oo 시·도와 oo 교육청, oo 치과의사회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시도와 교육청, 지역치과의사회(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 상호 간에 업무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협업을 바탕으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협약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협약기관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한다.
2. oo시는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협약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협약기관과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애로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3. oo 교육청은 학생들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지청 및 학교에 안내하고 아동치과주치의 참여 학생의 검진 결과를 학생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4. oo 시 지역치과의사회는 회원들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사업 홍보를 하고 동 제도가 조기에 원만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주치의로서 책임감을 갖고 사업에 참여한다.

제3조(변경) 협약 유효기간 중에 협약 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의내용을 협약기관 간 상호 협의하에 변경 할 수 있다.

제4조(상호신의) 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5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협약기관 모두가 서명한 날로부터 '협약기관' 간 합의하에 변경될 때까지 효력을 발휘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협약기관은 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기타)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 협력사항은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하거나 담당자간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다.

본 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약서를 3부 작성하여 각 협약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0월 00일

00 시도
시장

00 교육청
교육청장

00 치과의사회
회장

붙임 3

사업계획서 양식

지자체명				
자치단체장	성명		전화번호	
계획서 작성 총책임자	성명		소속부서명	
			전화번호	
			E-mail	
			FAX	
붙임과 같이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시장, 도지사 등)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시도(+시군구) 주소 -				

1. 사업계획서 요약

구분		내용
사업추진 필요성	아동 구강건강 수준	
사업추진 정책환경	구강보건 인프라	
	구강보건 사업	
사업추진 의지	협력체계 구축운영	
사업 운영계획	연계사업 운영계획	
	사업 홍보계획	
	현장 의견수렴 계획	
	재정계획	

2. 사업계획서

1. 지역 현황				
지역인구수	명	행정구역		
초등학교 수	개	초등학교 학생수 (‘24학년도 기준)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명 명 명 명 명 명

2. 구강보건 지표(%), 가장 최근 자료 활용			
o 영유아 국가구강검진 수검률		o 아동 및 청소년(6~18세) 치아 홈메우기 이용률	

㉠ 사업추진 필요성

1) 아동 구강건강 상태

○ 학생 구강검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아동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활용

2) 기타 필요성

○ 자유롭게 기술

② 사업추진 정책환경

1) 구강보건 인프라 현황

구분	현황	구분	현황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수	개소	지역 내 치과의료기관 수	(병원) (의원) 개소 개소
보건소	개소	구강보건실 구강보건센터	개소 개소

2) 구강보건사업 시행 현황

(1) 총괄 현황

○ 대상자별 및 사업유형별 현황, 사업 규모(지원자 수, 사업비 등) 등

(2) 취약계층 지원사업 현황

○ 취약계층 치과의료비 지원사업,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사업 등

③ 사업 추진 의지

1) 협력체계 구축·운영

가. 지자체 담당부서 : 인원구성 및 역할

--

나. 시도 협의체 구축(계획)

- 시도치과의사회, 교육청 등 협력 방안

다. 시군구 협의체 구축(계획)

- 시군구치과의사회, 교육지원청, 학교 등 협력 방안

2)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협의 진행 현황

- 협력기관 면담, 실무회의 개최 등 진행 상황

④ 사업 운영 계획

1) 연계사업 운영계획

- 장애아동 주치의 방문지원, 취약계층 심화치료비 지원 등, 시범사업 기본모형과 연계하여 서비스 범위 및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 자원/사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계획

2) 사업 홍보계획

○ 주치의 및 아동 참여 독려를 위한 학교, 학부모, 치과의사회 등 지역 사회 홍보계획

3) 현장 의견수렴 계획

○ 현장과 가장 가까운 소통창구로서, 참여자(주치의, 아동) 뿐만 및 애로사항 의견수렴 계획

4) 재정계획

○ 시범사업 기본모형 보완 및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지자체 재정의 추가 투입 계획